|  |  |
| --- | --- |
|  | 솔라피 발신번호 등록 제한 개수 변경 신청서 |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▶ 신청자 정보 (기업회원 전용) | | | |
| 사업자명 |  | 대표자명 |  |
| 회사 주소 |  | 사업자등록번호 |  |
| 담당자명 |  | 유선번호 |  |
| 이메일 주소 |  | 휴대폰번호 |  |
| ▶ 신청내용 | | | |
| 계정 고유번호 |  | | |
| 희망 최대 개수 |  | | |
| 유의 사항 | 가. 회사의 의무  1. 회사는 스팸메세지 ∙ 문자피싱메세지∙ 발신번호조작 등으로 인지되는 문자메세지에 대해서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.  나. 이용자의 의무  1. 이용자는 스팸메세지 ∙ 문자피싱메세지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 ∙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.  2. 회사는 이용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단, 회사는 전단의 서비스 차단 후 지체 없이 당해 차단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.  3. 회사는 차단 된 문자 서비스에 관한 자료(변작된 발신번호, 차단시각, 전송자명 등)를 1년간 보관.관리하고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  다.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 1.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 할 수 있습니다.  ① 발신번호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번호,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발신번호 변작 등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라. 계약해지  1. 방송통신위원회 ∙ 한국인터넷진흥원 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이 스팸메세지 ∙ 문자피싱메세지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2. 이용자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마**.** 희망 최대 개수  1. 근무자 수의 최대 3배까지 신청이 가능하며, 재직 인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| | |
|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 및 ‘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’에 의해서 위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발신번호 제한 개수 변경을 신청합니다.  20 년 월 일  사업자명 / 대표자 (서명 또는 직인) | | | |

※ 발신번호 등록 페이지 (https://solapi.com/senderids) > [개수 제한 해제] 버튼을 통해 업로드하여 제출 합니다.

